

제 2987호	화순군공보		발행일 : 2020년 12월 24일 발행인 : 화순군수 발행처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기획감사실						
차 례									
고 시									
화순군 고시 제2020-190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1							
공 고									
화순군 공고 제2020-1830호		2021년 석정·용두·풍암·한지·오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2							
화순군 공고 제2020-1863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화순군 공고 제2020-1864호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4							
화순군 공고 제2020-1869호		공인 폐기 및 등록 사항 공고 15							
화순군 공고 제2020-187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16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란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3.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824 외 16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11건, 폐지 6건)			불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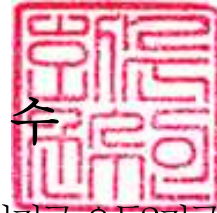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석정지구 · 용두지구 · 풍암지구 · 한지지구 · 오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 순 군 수



1. 사 업 명 : 2021년 석정지구·용두지구·풍암지구·한지지구·오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 업 위 치 : 총 1,387필지(758,890㎡)
 - 춘양면 석정리 227-7번지 일원(457필지, 275,369㎡)
 - 춘양면 용두리 46번지 일원(322필지, 177,159㎡)
 - 청풍면 풍암리 65번지 일원(241필지, 83,091㎡)
 - 청풍면 한지리 247번지 일원(101필지, 24,607㎡)
 - 동 면 오동리 268번지 일원(266필지, 198,664㎡)
3. 공 고 기 간 : '20. 12. 22. ~ '21. 1. 20.(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사업시행자 : 화 순 군 수
5. 사 업 기 간 : 2021. 01. 01. ~ 2022. 12. 31.
6. 사 업 예 산 : 272,354천원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조서 등
 - 나. 열람장소 :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화순군청(행복민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1-379-345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61) 379 - 3451~2

나. 팩 스 : 061) 379 - 3500

다. 우 편 : 우)58112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붙 임 : 의견제출서식 1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5호 및 제2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20. 12. 23. ~ 2021. 1. 6.(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대 상 자 : (주)하***교육센터 (대표 김*재)
5. 공시송달 내용

▣ 처분예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 가. 대 상 : 백아면 옥리 499번지 등 5필지 (3,770㎡)
- 나. 수허가자 : (주)하***교육센터 (대표 김*재)
- 다. 취소사유 : 허가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 위반
- 라.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5호
- 마. 청 문 (2차)
 - 일 시 : 2020. 1. 7.(목) 14:00
 - 장 소 :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3층)
 - 청문주재자 :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개발민원팀장 박*하
 - 문 의 :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 061-379-3532)

6. 유의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에 청문에 참석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대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대상(안 제3조)

- 정부 및 도의 재정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를 군의 재정지원 대상 사업으로 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사업

나.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안 제4조)

- 교통량조사 등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 실시
-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실시

다. 재정지원의 신청 및 결정(안 제6조 및 제7조)

- 재정지원 신청 방법
- 재정지원 적합 여부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라.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중단(안 제9조 및 제10조)

- 재정지원 적정 사용 여부 검사
- 재정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 13.(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0. 12. 24. ~ 2021. 1. 13.(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uskke@korea.kr

2) 주 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3) 팩 스 : 061-379-381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061-37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 하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이하“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에 따른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
3. 학생·청소년 요금 할인, 교통카드 및 환승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
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량조사를 포함한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

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운송원가에서 운송 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운송원가 산정) ① 제4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

바. 차량보험료

사.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감가상각비 산정을 위한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할 때 발생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은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는 대폐차 지원금, 버스 구입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연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유가보조금, 기타 연료비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
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
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군
수가 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
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서를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 여부
2.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3. 신청자금의 적정성
4.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금의 조정 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	원			
지원신청 금 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사업기간				
「화순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수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공 고

화순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9조(공고), 제10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및 등록한 공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4.

화 순 군 수



1. 공인명 및 인영

내역	공인명	인영	재질	규격 및 모형
폐기	화순군재정안정화 기금출납원의인		목재	1.8cm×1.8cm
등록	화순군통합재정 안정화기금출납원인		목재	1.8cm×1.8cm

2. 최초사용연월일 : 화순군 공보발행일

3. 신조공인 사유

- 화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이 출납 등을 하기 위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같은 법 제79조까지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화 순 군 수



----- 다 음 -----

1. 매각대상물건(차량) 및 공매예정가격 : 1대

- 83조9049 [봉고Ⅲ 4륜구동] , 2013년식 : **3,000,000원**

2. 공매공고 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1. 1. 18.(월) ~ 2021. 1. 27.(수) 24:00**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대상에서 제외)

나. 입찰참여마감일시 : **2021. 1. 27.(수) 24:00** (보증금을 입금 후, 입찰참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21. 1. 28.(목) 14:00**

(주)오토마트(www.automart.co.kr) 인터넷공매의 결과 조회에 게시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 (주)오토마트 인터넷 입찰 (www.automart.co.kr)

4. 배분요구 종기일 : 2021. 1. 14.(목)

5.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 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액의 10% 이상

(기한내 미입금 시 입찰 참가자격 취소)

다.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부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입금계좌번호 : 농협 668-01-005470, 예금주 : 화순군청**

라.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등록

마. 낙찰되지 않은 자의 공매보증금은 모두 이자없이 반환(계좌이체)

바.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사. 국세징수법 제72조(공매참가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할 수 없음.

아.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모든 행위는 취소됨.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

나.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다.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최고기간 10일)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최고기간 10일)에 잔(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조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

9.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공부기재사항과 차량점검서상의 표시착오,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화순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 하에 공부열람과 반드시 현물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당 약 15,000원 정도)

※ 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락받은 자동차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차량보관장소 : 오토마트 광주보관소

※ 본 공고상 내용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차량공매담당자](#)(☎ 061-379-315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